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개정법률(안)

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7조 및 같은법”을 “제27조, 제27조의2 및 같은 법”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3호 중 “단체표준인증단체 인증업무 신청의”를 “제13조에 따른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 (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단체표준 인증심사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③ 사무국은 제2항에 대한 세부규정을 국제표준에 기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설치 및 위원 구성 등”을 “설치”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

제3조제4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한다”를 “하며, 심의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의결 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단체표준 제·개정(안) 신청단체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
2.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3. 단체표준 제·개정(안) 개발에 참여한 자
4.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⑫ 심의회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 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제2호 중 “이내”를 “이내 다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해당 심의 안건에 대해 제3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은 협의에 참여 할 수 없도록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한다”를 “하며, 회의 일시, 참석위원 및 심의결과 등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심의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 단서 중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의 설비 사용계약 또는 제품 시험·검사업무”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적합성평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분야 공인기관과”로 하고, 같은 항 단서의 후단 중 “시험·검사업무 협약체결”을 “시험·검사

업무 협약체결”로, “된다”를 “된다. 이 경우 위탁하는 시험·검사 항목이 공인기관의 인정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 검토 등)”을 “(단체표준인증단체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단체표준인증업무를 실시하려는 단체는 별지제1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은 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단체표준인증단체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단체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③ 사무국은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이 적합한 경우 단체표준인증종합지원시스템에 해당 단체를 등록하고 그 사실을 해당단체에 알려야 한다.
- ④ 사무국은 제3항에 따라 등록된 단체표준인증단체와 단체표준인증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⑤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인증대상 품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등록 시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 중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 제1호 공장심사 또는 제3호 사업장 심사의 경우 ISO 9001

인증기업, KS인증기업,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인정기구로부터 제품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으로 인정을 받은 공장 또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인증기업이 갖추어야 할 정보를 제출할 경우, 단체표준 인증심사 기준의 각 항목과 동일한 심사 항목에 대해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⑨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 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심사의 경우 종료시점에 인증심사결과 보고서를 신청기업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제1항 후단 중 “3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 소비자 안전확인이 필요할 경우 등은”으로, “특하여”를 “받아 사후관리 실시 주기를”로, “있다”를 “있으며, 사후관리 주기 축소 사유에 대해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단체표준인증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시,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사일수 축소 및 실시 시기를 조정 할 수 있으며, 인증단체의 업무규정에 명시 하여야 한다.

1. KS, KC 인증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인증심사에서 동일한 심사항목에 대해 심사를 받은 경우
2. 인증기업이 동일 인증단체의 인증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유사한 항목을 연속적으로 공장심사 (반기별, 분기별 등)를 받을 경우

제1조 본문 중 “고시는 발령한”을 “요령은 고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제1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를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으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단체표준인증단체”를 “제2조에 따라 단체표준인증단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국제품인정기구(KAS)로부터”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공인기관의 인정 등)에 따라 한국인정기구로부터 KOLAS 제품인증 분야의 공인기관으로”로 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검토하고 보완이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사무국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 부칙 외의 부분 중 “이 고시는 이”를 “이”로, “2022년 7월 29일”을 “2024년 1월 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장심사에 관한 적용 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개정 시행일에 따라 적용한다.